

평창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104
----------	-----

제출년월일 : 2019. 03.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관내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방안 미비로 인해 지원 조건이 좋은 타 자치단체로의 이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우리군 고용창출 및 인구 정책에 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으로 농공단지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제3조)
- 농공단지 관리업무의 범위(안 제4조)
-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 구성 및 기능(안 제5조 ~ 제8조)
 - 협의회에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
 - 협의회 구성
 - 협의회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 공공시설의 관리 위탁
-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안 제9조 ~ 제12조)
 -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 직접생산 물품의 수의계약
 - 입주기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
 - 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 농공단지 업무 담당공무원 포상·면책 규정(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2019년 제2회 추경 또는 2020년 당초예산 반영

다. 합 의 : 강원도와 도비 지원 협의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2019. 2. 20. ~ 2019. 3. 12. 제출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5) 조례·규칙심의회 : 원안의결

평창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창군에서 지정·조성한 농공단지 관리와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공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라 평창군에서 조성한 농공단지를 말한다.
2. "농공단지의 관리"란 농공단지 안의 시설의 설치, 용지 및 시설의 매각·임대, 유지·보수와 개량 등 제4조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리업무)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공단지 안의 용지 및 시설의 매매계약 또는 임대계약 체결
2. 공공시설(상·하수도, 도로, 가로등, 소화전, 통신관로, 울타리, 공동이용관리사,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3. 농공단지 안의 시설의 운영과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사항
4. 농공단지 안의 공동시설의 이용자로부터 비용 징수
5. 입주기업체의 용지 및 공장 등 시설의 설치와 등록
6. 그 밖에 농공단지 안의 시설의 일반적 관리업무

제5조(협의회)의 운영 및 기능) ①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자율로 정한다.

③ 협의회는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처리와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력, 자금, 기술 등 입주기업 애로사항 수렴
2. 산학연 협력사업 과제 발굴
3. 농공단지 활성화 세미나·강연회·홍보활동 등 행사개최
4. 그 밖에 농공단지 발전 및 입주기업 지원에 관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업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의 회원은 입주기업체의 대표자 전원을 회원으로 한다.

② 협의회는 입주기업체의 대표자 1인을 동등한 자격으로 하여 구성하는 총회와 총회에서 선임한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로 정하며 농공단지관리 대행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 소속 공무원 중 농공단

지 관리업무 담당 부서장을 당연직 이사로 둔다.

③ 협의회(협의회의)의 실무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④ 관리사무소의 설치·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총회의 정관 또는 회칙으로 정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공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협의회(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제4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관리업무는 제외한다.

제8조(공공시설의 관리 위탁 등)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군수는 농공단지 내 군 소유의 지원시설 등을 협의회에게 관리 위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받은 지원시설 등의 일부를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입주기업체 등에게 임대할 수 있다.

제9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계획의 수립) 군수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근로자 아파트공급 등 농공단지 입주기업 종업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2. 용수공급사업, 산업재해 예방사업, 환경오염 방지사업
3. 교육·연수사업
4. 농공단지 생산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국내·외 판로 지원 사업
5.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대한 생산제품 홍보 및 구매
6.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7.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의회 사업지원 요청이 있을 때 농공단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① 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농공단지 직접 생산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11조(입주기업체 지원) ① 군수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1. 물류보조금: 생산품 판매를 위한 물류비용의 50퍼센트 범위 내
2. 인증 지원보조금: 생산 물품의 인증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범위 내
3. 통근버스 운영 지원금: 직원 출·퇴근용 통근버스 운임의 50퍼센트 범위 내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조금 지원 조건, 기간 등 세부 지원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기반시설설치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입지여건이 열악한 농공단지
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정보화체계 구축 등의 사업과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공단지 내의 도로(진입도로를 포함한다), 상·하수도, 녹
지, 공동이용 건축물 등 노후화된 공공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은 제외
한다)의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및 면책) ① 군수는 농공단지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
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
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
의 경미한 과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평창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
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농어촌산업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에 고유하거나 독특한 특산물·전통문화·경관 등 유형·무형의 자원(이하 "특산물등"이라 한다)을 활용한 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이하 "농어촌산업"이라 한다)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등 기업집적화 및 농어촌산업 인프라 조성 지원

□ 농어촌정비법

제79조(생산제품의 판매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을 지원하고 계열화를 촉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공공기관은 제품 생산자와 생산 제품 구매에 관한 수의계약(隨意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6.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비용추계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평창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1조(입주기업체 지원)에 따른 입주기업체 물류비 및 인증 지원 보조금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농공단지 입주업체로부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물류비와 제품 인증(우수, 신기술, 녹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50%의 범위에서 지원
-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 추진

나. 추계 결과

구 분	비용산출	소요액(천원)	비 고
물류비	20,000천원 × 12개월	240,000	매년
인증비용	2,000천원 × 5개 업체	10,000	매년
기반시설 정비비		100,000	1회
계		350,000	

다. 재원조달 방안

- 자체수입(지방세)으로 충당하고자 함.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일자리경제과장 최 찬 섭
연락처	(033) 330 -254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세 출		3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1,350,000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류비 지원		240,000	240,000	240,000	240,000	240,000	1,200,000
농공단지 입주업체 인증비용 지원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		100,000					100,000
재원 조달		3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1,35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3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1,350,000
	지방세	3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1,35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